

글로벌인문학술원규정

시행일 : 2019. 6. 28.

제1조(명칭) 본 학술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글로벌인문학술원(Institute for Global Humanities, 이하 “본 학술원”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학술원은 인문학적 사유를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적 문제의식과 결합함으로써 인문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융합적 지식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하는 거점연구
2. 산하 6개 연구소의 학술활동 총괄 및 지원
3.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
4. 학술지 발간
5.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, 특강 운영을 통한 사회봉사
6. 학문후속세대 지원
7. 대형연구과제 수주
8. 기타 본 학술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시행

제4조(소재지) 본 학술원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5조(조직 및 직책) 본 학술원의 조직 및 직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원장
2. 운영위원회
3. 자문위원회(비상설)
4. 편집위원회
5. 대외협력위원회
6. 학술진흥위원회
7. 산하 연구소(비교문화연구소, 감정문화연구소, 동아시아서지문화현연구소, 현대문학연구소, 글로벌인문기술연구소, 언어대조·언어교육연구소)
8. 감사
9. 행정실
10. 총무이사

제6조(원장) ① 원장은 본 학술원을 대표하고, 본 학술원의 운영을 총괄한다.

②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(원)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, 본 학술원을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관장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 학술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본 학술원의 사업계획
2. 본 학술원의 예산 및 결산
3. 본 규정의 개·폐 또는 본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5. 기타 본 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- ② 위원회는 원장, 산하 6개 연구소장, 총무이사, 학술진흥위원장, 대외협력위원장,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다.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자문위원회) ① 원장은 본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③ 자문위원은 국내·외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.

제9조(편집위원회) ① 본 학술원의 전문학술지, 연구·번역총서 및 저널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
-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둔다.
- ③ 위원은 국내·외 학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대외협력위원회) ① 본 학술원은 대외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.

-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을 둔다.
- ③ 위원은 국내·외 학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학술진흥위원회) ① 본 학술원은 학술활동 총괄 및 대형연구과제 수주 등을 위해 학술진흥위원회를 둔다.

- ② 학술진흥위원회는 학술진흥위원장과 학술진흥위원을 둔다.
- ③ 위원은 국내·외 학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산하 연구소) ① 본 학술원 산하에 비교문화연구소, 감정문화연구소, 동아시아서지 문헌연구소, 현대문학연구소, 글로벌인문기술연구소, 언어대조·언어교육연구소를 둔다.

- ② 학술원 산하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(감사) ① 본 학술원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.

- ② 감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행정실) 본 학술원 및 산하 부설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제15조(재원) 본 학술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한국연구재단 등 국공립 기관의 용역 사업비
2. 본교의 연구소 지원비
3. 보조금 및 기부금

4. 기금 및 기타 수익금

제16조(회계) ① 본 학술원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
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7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로 시행한다.